금융감독원	**보 도 자 료**	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5.7.30.(수) 조간	배포	2025.7.29.(화)

담당부서	분쟁조정1국 분쟁조정기획팀	책임자	팀 장	김동훈	(02-3145-5212)
		담당자	선 임	박초원	(02-3145-5215)
			조사역	이화진	(02-3145-5217)

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
- 하절기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관련 -

주요 내용

◈ 여름철에는 **휴가, 여행, 야외활동**이 **늘어나는 시기**로 이로 인해 **물놀이**나 **레저 활동** 중 **부상** 등 **우연한 사고**도 **함께 증가**

○ 이러한 **계절적 요인**으로 **보험상품**에 대한 **수요**가 **높아지지만**, 실제 **보험금 청구과정**에서 **소비자와 보험사간 해석차이**로 **분쟁 발생**

☞ 소비자들이 보험을 통해 **여름철 사고**에 보다 **효과적**으로 **대비**할 수 있도록 **반복적**으로 **발생**하는 **주요 분쟁 사례**를 **안내**

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

❶ **스쿠버다이빙, 수상보트** 등 사고가 **동호회 활동** 중에 **발생**하였다면 **상해보험**에서 **보상되지 않을 수** 있습니다.

❷ **제트스키, 서핑보드 등 렌털 장비 파손시 일반 배상책임 보험**으로는 **보상되지 않을 수** 있습니다.

❸ **수영장** 등 **종합체육시설**에서 **다쳤어도 사업주**의 **과실이 없으면** 배상책임보험으로 **보상되지 않을 수** 있습니다.

❹ **에어컨 등 가전제품**이 구입 후 **10년 이상 지났거나**, **보상판매** 및 **교환**에 드는 비용은 **가전제품 수리비 보장에서 제외**될 수 있습니다.

❺ **여행자보험**은 **휴대품 단순분실**을 **보장하지 않으며**, **휴대폰보험**과 **여행자 보험**을 **모두 가입**해도 휴대폰 파손시 **중복 보상되지 않을수** 있습니다.

1 스쿠버다이빙, 수상보트 등 사고가 동호회 활동 중에 발생하였다면 상해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[민원 사례]

□ 평소 **스쿠버다이빙**을 **취미생활**로 즐기던 박○○은 **동호회 회원**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**스쿠버다이빙 체험 중** 산호에 긁히는 상해를 입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**가입했던 상해보험**의 **보험금 청구**

➡ 보험회사는 **동호회 활동 목적**으로 한 **스쿠버다이빙**은 **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**에 해당되므로 **보험금 지급을 거절**

* **[보험약관(예시)]**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, 직무 또는 **동호회 활동 목적**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**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**

1. **전문등반(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, 경험,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), 글라이더 조종, 스카이다이빙, 스쿠버다이빙, 행글라이딩, 수상보트, 패러글라이딩**

[참고] 스쿠버다이빙 등 고위험 레저활동 보장 예시

보험유형	위험한 레저활동 보장여부	보장범위 특징
일반상해보험	× 보장제외	일상생활 중 사고중심보장
여행자보험 (레저특약 불포함)	× 보장제외	여행 중 일반사고 중심
여행자보험 (레저특약 포함)	○ 보장가능	여행 중 고위험 레저활동 포함
레저전용 상해보험	○ 보장가능	레저활동 중 발생한 사고 보상

※ 보험회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내용, 구체적인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 소비자 유의사항 >

▣ **동호회 활동**을 **통한 특수 레저활동**은 **일반 상해보험**에서는 **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** 있으니 **유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▣ **여행 중 동호회 활동**을 **통해 스쿠버다이빙, 수상보트** 등의 **활동**이 **예정**된 경우 **가입하신 상해보험, 여행자보험** 등의 **보장내용**을 **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
2 제트스키, 서핑보드 등 렌털 장비 파손시 일반 배상책임 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[민원 사례]

□ 김○○씨는 여름방학 기간 중 동남아에서 **제트스키**를 일주일간 **대여**해 **이용**하던 중 기체가 뒤집히면서 **시동이 걸리지 않아 렌털업체**에 **수리비**를 **배상**한 뒤 가입했던 **여행자보험**의 **배상책임 보험금**을 **청구**

➡ 보험회사는 대여하여 사용한 제트스키는 **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**하는 **재물**에 해당되어 배상책임보험의 **약관상 면책대상**이므로 **보험금 지급이 어려움**을 안내

* **[해외여행중 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(예시)]**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**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.**

1. 피보험자가 **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**에 대하여 **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**

[참고] 해외여행중 배상책임보험* 보장 예시

* 여행 중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,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

	신체피해	장비피해
자신 피해	× 보장제외	× 보장제외
타인 피해	○ 보장가능	○ 보장가능 예 : 부딪쳐서 타인이 타고있는 장비를 파손시킨 경우 등

※ 보험회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내용, 구체적인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 소비자 유의사항 >

▣ **렌털계약**에 따라 **실질적**으로 **점유**하여 **사용 또는 관리**한 제트스키, 서핑보드 등의 **장비 파손**에 대해서는 **배상책임보험금**을 **지급받지 못할 수** 있습니다.

▣ 한편, **렌털업체**가 별도 **레저장비 손해보장**이 포함된 **보험**에 **가입한 경우 장비 파손**시 **보험금**이 **지급**될 수 있습니다.

3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다쳤어도 사업주의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[민원 사례]

□ 박○○는 여름 휴가를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방문한 수영장에서 아이가 급하게 뛰어가다가 넘어지면서 **발목 골절상**을 입자 **수영장 사업주가 가입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**으로 **치료비**를 청구

수영장 등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	
의무가입	수영장, 스키장, 골프장 등 종합체육시설 (단, 체력단련장, 당구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은 면제)
보장내용	체육시설의 설치나 이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책임이 생길 경우 신체손해 및 재물손해에 따른 법률 배상책임을 부담
보장사례	사업장이 제대로 안전관리를 하지 않는 등 사업주 과실로 고객이 다친 경우

➡ 보험회사는 **사업주**의 **과실**로 인해 **제3자의 신체 및 재산**에 **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보험금**이 **지급**되는데, **사업주**의 **안전관리 의무 위반**이나 **과실이 없는 피해자**의 **부주의**나 **우연한 사고**는 **법률상 책임**이 **없으므로 보장이 어렵다**고 안내

* **[보험약관(예시)]**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서 「신체장해」또는 「재물손해」로 피보험자가 **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**합니다.

【참고】 관련 대법원 판례

※ (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다37652 판결)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**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**을 말하는 것이고,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**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**,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**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**의 것을 말한다.

< 소비자 유의사항 >

▣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**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물 관리 부주의**로 인한 **경우에만 배상책임 보험**으로 **보상**될 수 있습니다.

▣ 사업주가 **구내치료비 특약***을 **가입**하였을 경우 **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**가 **시설 내**에서 **발생**하였다면 **치료비**가 **보험금**으로 **지급될 수**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* 체육시설,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 **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**하는 특약

4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구입 후 10년 이상 지났거나, 보상판매 및 교환에 드는 비용은 가전제품 수리비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[민원 사례1]

□ 박○○는 무더운 여름날 **에어컨**을 켜려다 **냉매 관련 고장**이 **발생**해 **수리**를 하고, 가입한 **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특약**※으로 수리비 청구

※ 주로 주택종합보험, 화재보험 등에 부가되며 가전제품이 고장난 경우 수리비용을 보장

➡ 보험회사는 **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**한 **제품**에 대한 **손해**는 **보상하지 않는 손해**이므로 보장이 어렵다고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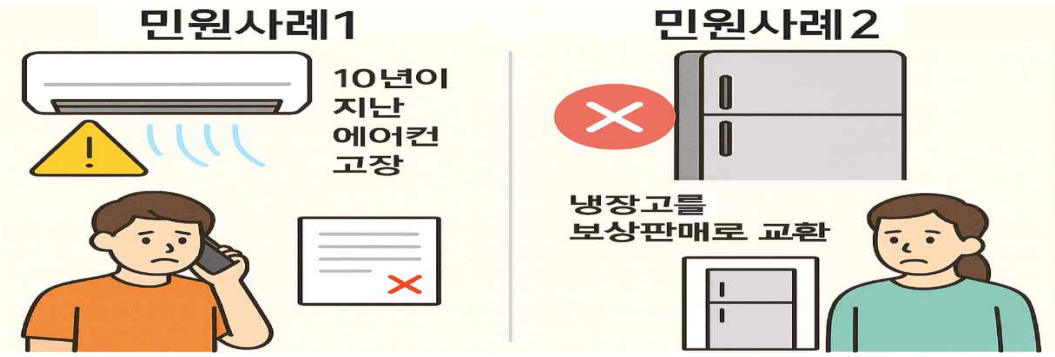
* **[보험약관(예시)]** (보상하지 않는 손해) 회사는 **다음의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 1.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**

[민원 사례2]

□ 김○○는 **냉장고**가 고장나서 **수리**를 맡겼으나 **해당 부품**이 **단종**되어 **수리불가 판정**을 받은 뒤 제조사로부터 **보상판매 형태**로 **교환** 후 **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** 특약의 **보험금**을 **청구**

➡ 보험회사는 **고장수리비용보험금**은 **실제 수리**하여 **수리비를 지출**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**교환**에 **소요된 비용**은 **지급대상이 아니라고** 안내

* **[보험약관(예시)]** ①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**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**합니다.



< 소비자 유의사항 >

▣ 제조일로부터 **10년이 지난 가전제품**은 고장수리비용 보장특약에서 **보장하지 않을 수**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▣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장특약은 **실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**에 한해 보상되므로 수리대신 **교환**이나 **신제품 구매**로 **발생한 비용**은 **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**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일부 보험상품은 가전제품을 교환한 경우에도 보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, 가입하신 약관의 보장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5	**여행자보험은 휴대품 단순분실을 보장하지 않으며, 휴대폰 보험과 여행자 보험을 모두 가입해도 휴대폰 파손시 중복 보상되지 않을수 있습니다.**

[민원 사례1]

□ 최○○씨는 여행 중 숙소 인근 상점에서 **휴대폰**을 **분실**하고 **가입**하였던 **여행자보험**의 휴대품 손해 특약으로 **보험금**을 **청구**

➡ 보험회사는 **단순 분실**은 **보상하지 않으며** 객관적으로 휴대폰을 **도난당한 사실**이 **입증**된 경우 **보상 가능**하다고 **안내**

* **[보험약관(예시)]**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**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.**
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

[민원 사례2]

□ 이○○씨는 해외여행 도중에 사진을 찍다가 **휴대폰**을 **떨어뜨려 파손**되는 **손해**를 입자 **여행자보험**의 **휴대품 손해 특약**으로 **보험금**을 **청구**

➡ 보험회사는 **휴대폰 보험**과 여행자보험의 **휴대품 손해특약**에 **모두 가입**한 경우 **중복보상하지 않으며, 실제 지급한 수리비**를 한도로 **보험금**을 **비례 보상**한다고 안내

* **[보험약관(예시)]** (지급보험금의 계산) ①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**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,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(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)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**합니다.

휴대폰의 단순 분실·중복 보험 가입에 따른 보장 범위



< 소비자 유의사항 >

▣ 여행자보험의 **휴대품 손해 특약**은 **단순 분실**이 아닌 **객관적**으로 **도난**이 **입증**된 경우 **보상되니 유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▣ **휴대폰 보험**과 **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특약 모두 가입**한 경우 **휴대폰 파손**시 **실제 수리비 범위 내**에서 **비례보상**됩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